

[붙임 3]

경력직 서류심사 경력산정 기준표

적 용 대 상 경 력	적용률
○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○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 ○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○ 도시철도운영기관 - 도시철도법 제2조 제8호 및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 -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(철도운송면허포함)를 소지한 사업자가 위탁한 운영사	100 %
○ 그 외(일반 기업 등)	80 %

※ 근무경력 기준표를 바탕으로 근무경력 평가

※ 일용직 및 인턴, 교육생, 실습생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※ 임용 후 호봉산정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름